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지역경제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시설규모	위탁기간
성북구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일:2014. 11.)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 대지면적:943㎡ · 연면적:2,096㎡ · 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1기] 2015.04.01.-2017.12.31
				[2기] 2018.01.01.-2020.12.31
				[3기] 2021.01.01.-2023.12.31

나.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6. 12. 31 [3년]

구분	1~3기 민간위탁 (2015년~2023년)	4기 민간위탁 (2024년~2026년)
센터명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사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민간위탁 계약 종료(2023.12.31)에 따른 위탁사무 조정
및 센터명 변경 필요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지원(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홍보, 시장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되는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연합체 또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